세무조정계산 다음의 ‘1’과 ‘2’중 많은 금액 17,850,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,000,000원을 차감한 16,850,000원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1. 각종 감면 후 세액 ➜ 17,627,451원 ⦁과세표준：255,000,000원 ⦁산출세액：31,000,000원(255,000,000×세율) ⦁감면세액：13,372,549원(농공단지입주기업) \* 감면세액＝산출세액×감면소득/과세표준 × 감면율(50%) 13,372,549 ＝ 31,000,000 × 220,000,000 / 255,000,000 × 50 100 ⦁각종 감면후 세액 : 17,627,451원 \*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,000,000원 미차감 금액임. 2. 최저한세 (감면전 과세표준의 7%) ➜ 17,850,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가감소득 255,000,000 × 7% ＝ 17,850,000원 계 255,000,000